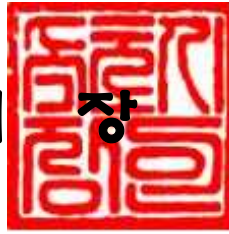


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04월 16일

속 초 시 장



1. 행정처분일 : 2012. 04. 16.

2. 행정처분 대상업체

상 호 법인등록번호	대표자	소재지	처분업종 (등록번호)	행정처분 내 역	행정처분 사 유	적용법규
(주)두산지에스피산업 200111-*****	임장군	속초시 대포동 947-1번지	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 (광주서2009-07-03)	영업정지 3월 (2012.05.01~ 2012.07.31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(자본금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

3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 및 건설업정보통신망(<http://con.kiscon.net>)

4. 공고내용

가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정보통신망(<http://con.kiscon.net>)에 공고하였으며,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,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설과(☎033-639-27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